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장 사용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라 한다)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라 한다)는 서울교대 소유 교육장 사용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공제중앙회”가 서울교대 교육장을 안전교육 종합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중 이론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로 사용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서울교대”와 “공제중앙회”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실시를 통한 학교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3조(사용의 범위) ① “서울교대”와 “공제중앙회”가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교육장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장 대관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육대학교 시설물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시설현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 주요 교육시설: 종합문화관(450석), 컨벤션홀(220석), 사향문화관(200석), 교육공학실(150석), 세미나실(80석, 2실), 그랜드홀(250석), 강의실(40~50석), 전산강의실 등

■ 서울교육대학교 시설현황

- 토지현황

(단위 : m²)

계	교 지	체 육 장	비 고
86,350m ²	69,150m ²	17,200m ²	부설초등학교 포함

- 건물현황

(단위 : m²)

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81,633m ²	49,927m ²	16,867m ²	188m ²	12,067m ²	2,584m ²

2. 부대시설: 대학 내 주차장(약 250면)

3.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장의 사용은 “공제중앙회”가 주최하는 안전교육 교직

원 연수운영에 한한다.

제4조(사용기간) “공제중앙회”의 교육장 사용기간은 2019.11.1~ 2020.10.31.로 한다.

제5조(사용료 등) ①교육장 사용료는 서울교육대학교 시설물 이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월단위로 선납한다.

②제16조 제1항 2호~4호에 의거 “서울교대”가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대경비 등) ①청결유지 관리비 발생 시에는 “서울교대”가 산정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공제중앙회”는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중앙회”의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서울교대”의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사용) 교육장은 “서울교대”의 본연의 교육활동 및 학내 행사 시 우선 사용하며, 이때 “공제중앙회”는 연수 일정 조정 및 타 교육장 사용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서울교대”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관리) “공제중앙회”는 교육장을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교대”의 영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교대”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운영) 교육장의 각종 시설은 “서울교대”가 운영한다.

제10조(교육장의 질서유지 등) “공제중앙회”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 시 안전 및 안내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 사용) “공제중앙회”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서울교대”가 운영하는 주차장 구역에 한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 ① “공제중앙회”는 분기별로 교육장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서울교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중앙회”는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일정, 인원 수, 교육과정 편성 등을

“서울교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서울교대”는 “공제중앙회”에 교육장 사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중앙회”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해소) “공제중앙회”는 교육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대한 노력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① 교육장 및 관련시설의 사용·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시공 상 하자 등 “서울교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제중앙회”가 부담한다.

② “공제중앙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교대”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공제중앙회”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서울교대”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교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공제중앙회”가 본 협약의 내용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지연하여 “서울교대”의 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공제중앙회”가 협약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4. “공제중앙회”가 교육장 사용을 중도포기 또는 타 교육장으로 이전한 때

② “서울교대”는 제1항 2호 내지 4호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중앙회”에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서울교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제중앙회”는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7조(정보·자료제공 의무) 안전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 운영과 관련한 “서울교대”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제중앙회”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 승계) 본 협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교대” 또는 “공제중앙회”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서울교대” 또는 “공제중앙회”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서울교대” 또는 “공제중앙회”는 그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19조(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서울교대” 또는 “공제중앙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비밀준수 의무) “서울교대”와 “공제중앙회”는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또는 영업비밀 등의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협약 이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분쟁해결) “서울교대”와 “공제중앙회”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소송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이 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교대”와 “공제중앙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울교대”와 “공제중앙회”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효력) ①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 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 처리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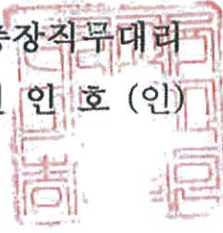
②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울교대”와 “공제중앙회”가 서명(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9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전 인 호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한 창 희 (인)

